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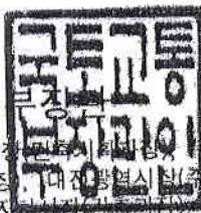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행(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1. 평소 건축 관련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제1항 및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및 허가 관련 업무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여 통 지침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법령 운영지침 1부, 끝.



국토교통부

수신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청(건축기획과장), 부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청(건축주택과장), 인천광역시청(건축계획과장),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청(건축주택과장), 울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청(건축과장),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강원도지사(건축과장), 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 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 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 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 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건축학회장, 한국건축가협회장,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한국어성건축가협회장

주무관 이창욱 행정사무관 김부병 과장 진결 2017. 10. 24.
남영우

협조자 시설사무관 최종화

시행 건축정책과-14129 (2017. 10. 2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835 팩스번호 044-201-5574 / leecu22@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

□ 변경사항

(17.10.24 시달)

현행	시달 사항
<p>○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p>○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 다만,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제외
<p>○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드렌치 등 기타 방화설비 설치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지자체에서 운영 	<p>○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유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치 등 기타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 받은 유리를 창문등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설비 설치 제외
<p>○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지자체는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를 허용 	<p>○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 불가

□ 지침 시달 사유

○ (외벽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은 '09.12.29에 신설되어 '10.12.30에 시행되었으며,

- 부칙에 따르면 신설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법 제52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 (방화유리) 일부 일선 지자체에서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 방화유리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문등에 설치하는 방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함
 - 다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한 유리를 창문등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창문등이 아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한 외벽에 해당되어 방화설비 설치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커튼월) 우리부는 외벽 또는 창호 모두로 해석할 수 있는 커튼월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외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건축기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사례가 있으나,
 -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이므로, 동 지구 지정의 취지에 맞추어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커튼월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함

□ 적용례

- 이 지침의 사항은 허가기관에서 이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행하며,
 - 지침의 사항이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며 용도변경은 제외함